

2025. 03. 06. (목) 11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충주시민햇빛발전소제1호기(용두배수펌프장)

2025 정기대의원총회

충주시민햇빛발전소제2호기(수안보다목적체육관)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www.cjsgsu.kr

인 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관 단체 여러분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5 충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정기 총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조합원의 에너지복지증진과 조합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충북도내 최초 시민 참여형 제1호 충주시민햇빛발전소를 시설 운영하는 등으로 조합운영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우리나라의 실질체감 경제지표 등의 부진한 흐름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외 변수가 올 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조합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재생에너지 성장 저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에서 대화 될 제2호 충주시민햇빛발전소 구축에 대한 사업이 그것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에너지복지와 에너지닥터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성과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 깊은 자리가

조합원 여러분의 힘찬 결속과 다짐으로 충주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기반을 건강·건전·지속 가능 발전하게 만들어가며 조합원님들의 자긍심 함양과 가치향상, 실질 성과 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합 발전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총회에 참석하신 대의원님과 조합원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6일

이사장 손 창 남

목 차

❖ 정기대의원총회 자료

• 제1차 정기총회 의사록	04
• 의안 심의	
- 1호 의안 : 2024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05
- 2호 의안 : 2024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07
- 3호 의안 : 출자금확정 승인의 건	17
- 4호 의안 : 선거관리규약(안) 승인의 건	19
- 5호 의안 : 2025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4

❖ 대의원 명단

	31
--	----

❖ 정관

	32
--	----

❖ 2024 기록 (사진철)

	40
--	----



제1차 정기총회 의사록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의 사 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24. 2. 16 (금요일)

2. 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 2. 28 (수요일) 17시

장소 : 충주시 상아배이길 84 호암공원생태전시관

3. 참석자

가. 조합원 : 80명 (개인 79명, 법인 1개)

- 손창남, 김영신, 신옥선, 한경석, 유순래, 김병덕, 임경산, 송성석, 손광희, 전세진, 이제민, 김한철, 이준희, 최내현, 박상욱, 김종선, 고영순, 이창희, 장석제, 안기숙, 김익준, 정현준, 손나영, 손병진, 김경희, 선광엘티아이, 신용철, 박부규, 권대영, 김준구, 홍기정, 최용태, 오승희, 이주화, 김영구, 주현화, 김옥수, 홍기황, 송해근, 이영기, 김영애, 홍성국, 박정연, 이영주, 이승희, 김봉호, 이정우, 최승희, 신연호, 이종욱, 황재구, 이의성, 서덕주, 이형우, 김동철, 현완호, 신한우, 박해성, 김성수, 송석범, 김수복, 황성애, 임동규, 임현규, 오슬기, 임슬아, 홍대희, 한봉재, 이광우, 신지민, 정원교, 홍종수, 한형선, 박경은, 노희경, 박문애, 김우현, 손한옥, 조수정, 한상호

나. 참석조합원 : 44명 (개인 25명, 위임 19명)

- 손창남, 김영신, 신옥선, 한경석, 김병덕, 임경산, 송성석, 손광희, 이

준희, 정현준, 김경희, 박부규, 최용태, 오승희, 이주화, 홍기황, 송해근, 이영주, 이정우, 최승희, 이종욱, 이의성, 박해성, 손한옥, 한상호
- 위임 유순래, 김한철, 손나영, 신용철, 김영구, 주현화, 김영애, 신연호, 황재구, 서덕주, 이형우, 신한우, 김성수, 홍대희, 신지민, 정원교, 홍종수, 김우현, 조수정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 승인의 건

5. 총회 내용

가. 이사장 손창남이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나. 정원 보고와 개최 선언

- 전체조합원 80명 중 25명 참석, 19명 위임으로 총 44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최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 지명과 기명날인인 선출

- 의장이 회의의 기록을 위한 서기로 오승희 조합원을 지명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의장이 회의록 확인을 위한 기명날인인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기명날인인으로 박부규, 손광희, 최승희가 추천되다. 관련하여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선출되다.

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마. 제1호 의안.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이 감사 신옥선에게 감사보고를 요청하고 신옥선감사가 감사 보고를 하다. 의장이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바 참석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바.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2023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에 관하여 찬부를 구한바,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의장이 김영신조합원에게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요청하여 김영신조합원이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23년 사업보고 및 지출 결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사.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안) 승인의 건

- 의장이 김영신조합원에게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김영신조합원이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아.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제1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 17시 45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에서 선출된 의장을 포함한 4인 손창남, 박부규, 손광희, 최승희 4명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24. 2. 28.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이 사 장 손 창 남

의사록 기명날인인 박 부 규

의사록 기명날인인 손 광 희

의사록 기명날인인 최 승 희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4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 승인

제2차 정기총회 감사보고서

본 감사는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53조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1년간(2024.1.1.~12.31) 수행한 업무집행 및 자금 운영 전반을 2025년1월31일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감사개요

분기별	기간	감사범위	감사자	비고
1/4분기	24.04.15	분기회계 및 조합운영전반	신옥선	
2/4분기	24.07.15	분기회계 및 조합운영전반	신옥선	
3/4분기	24.10.15	분기회계 및 조합운영전반	신옥선	
4/4분기	25.01.15	분기회계 및 조합운영전반	신옥선	

➔ 감사총평

본 감사인이 사무국과 이근홍세무회계사무소에서 준비한 조합운영 및 회계전반에 대한 서류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객관적 운영 여부를 4회에 걸쳐 감사한 결과, 조합은 지난 한해 동안 제1호기 햇빛발전소 건립·운영 등으로 자립기반의 토대를 다지는 과정에 있으며, 지역 내 에너지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 등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나 창업 초기 자립 경영이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작은 폭이라도 흑자로 결산을 보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며 특히 한정된 자산운영 등 조합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직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6일

2024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승인

제2호 의안

2024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사 업 보 고

1

조합의 안정적 기틀마련

□ 실무인원 확보

- 시간제(일 3시간) 근무자 1명 확보
- 정부 보조금 폐지 및 자체 수입 부족으로 근무시간 연장 계약 및 추가 인원 미확보

□ 조합원 증원

- 조합원 수 : 38명(2023) ⇒ 202명(2024)
- 출자금액 : 39,850,000원
- 1호기 건설에 따른 펀드 투자자 모집 및 대의원 총회 구성을 위해 신규 조합원 증원으로 1호기 사업비의 전액을 시민참여로 완성

□ 조직 및 회의 체계 확대

- 이사 증원 : 재무,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추가(10명 ⇒ 13명)
- 임원이사 회의 : 8회(1/4, 1/31, 3/18, 4/30, 7/16, 8/16, 11/19, 12/18)
- 전략회의 : 10회(5/21, 5/28, 6/11, 6/18, 7/3, 7/23, 8/5, 8/27, 9/24, 12/4)

2

충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용두배수펌프장) 준공

□ 조합설립 1년 만에 충주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충북최초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준공

□ 위 치 : 충주시 용두배수펌프장 옥상

□ 시설용량 : 51.46kW

□ 사 업 비 : 85백만원(참여조합원수 : 164명)

□ 임 대 료 : 24,260원 / 년

□ 추진 경과

- 부지 확보 : 충주시 협의 및 시의회 공유재산 사용승인(3/13)
- 펀드 모집 : 공고(4/8, 5/9, 2회), 목표액 85백만원, 모집액 86.8백만원
- 개발행위 허가(5/8), 사업설명회(5/9),
- 준공식 : 8월 8일

□ 발전 현황(8월 ~ 12월 누적)

- 발 전 량 : SMP 26,332kW, REC 39REC
- 발전수입 : 총 5,523,163원(SMP 3,718,503 원, REC 1,804,660원)

* 13REC 보유중



3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 사업

-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계약 5/7
- 30가구, 480만원 (달천, 신니, 노은, 주덕, 살미)
- 주말에 재능기부 및 봉사로 추진
- 1가구 1등 교체로 한정
- 전등스위치, 화장실 조명 등 추가지원
- 향후 추가지원 방안 마련 (충주시협의)
- 추진 실적 : 5호 (6/6 ~ 7/24)

GOOD충주 태양광 발전소 2호
환경정비(예초작업) 사업

- 계약금액 : 2847천원
충주시기후에너지과 11/4
- 내 용 : 기설치된 공공태양광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적 예초작업 진행
- 기 간 : 착공 (11/5), - 완료 (11/21)

4

지역 연대활동 강화

➔ 지역상생형 RE100 MOU 체결

6/26

- 내 용 : RE100 산업단지 투자유치 업무협약
- 참여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햇빛사협, 충북테크노파크, 금강전기(주)

➔ 2024년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에너지 담당공무원 직무 연찬회 10/18

- 계 약 : 충청북도(충북에너지산업융합원)와 계약 (500만원)
- 대상자 : 34명 (충북 11개 시군 에너지담당 공무원)
- 장 소 : 10/18, 09:30 ~ 15:00, 탄금공원 라운디카페 2층
- 내 용 :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RE100 충주시민클럽 소개

➔ 기 타 활 동

-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한마당 홍보 참여 5/25
-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6호기 준공식 참석 6/5
-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벤치마킹 11/13

5 충주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부지 선정

업무협의

충주시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
담당부서 협의

대상지 현장분석

8개소(공공 주차장)

대상지 선정확정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충주시/의회 협의

충주시 협의 (임대료 : 12,271,640원/년)
시의회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가결



결산보고

합계잔액시산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단위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47,786,816	282,915,284	1.유 동 자 산	235,128,438	
47,786,816	282,915,284	< 당 좌 자 산 >	235,128,438	
	497,500	현 금	497,500	
31,603,272	232,536,576	보 통 예 금	200,923,304	
300,000	300,000	단 기 매 매 증 권		
	17,715,016	외 상 매 출 금	17,715,016	
14,481,864	14,481,864	선 금 금		
	8,789,592	부 가 세 대 금 금	8,789,592	
1,401,710	8,604,736	미 환 금 부 가 세 대 금 금	7,203,066	
78,069,111	78,069,111	2.비 유 동 자 산		
78,069,111	78,069,111	< 유 형 자 산 >		
4,090,909	4,090,909	비 품		
73,978,202	73,978,202	시 설 장 치		
	168,234,785	3.유 동 부 채	259,614,125	91,379,344
	110,387,725	미 지 금 금	114,477,179	4,089,466
	957,470	예 수 금	1,028,900	71,430
	8,789,592	부 가 세 예 수 금	8,789,592	
		가 수 금	418,468	418,468
	48,100,000	시 민 펀 드 차 입 금	134,900,000	86,800,000
		4.자 본 금	39,660,000	39,660,000
		출 자 금	39,660,000	39,660,000
5,173,387	16,355,587	5.이 익 잉 여 금	11,182,200	
5,173,387	10,764,487	이 월 결 손 금	5,591,100	
	5,591,100	미 처 리 결 손 금	5,591,100	
	16,230,799	6.손 익	16,230,799	
	16,230,799	손 익	16,230,799	
	16,104,532	7.매 출	16,104,532	
	7,086,288	전 력 판 매 수 입	7,086,288	
	9,018,274	서 비 스 매 출	9,018,274	
	12,538,030	8.판 매 비 및 일 반 관 리 비	12,538,030	
	6,070,000	직 원 금 여	6,070,000	
	900,000	외 주 용 역 비	900,000	
	773,273	복 리 후 생 비	773,273	
	11,700	여 비 교 통 비	11,700	
	90,000	접 대 비	90,000	
	753,000	통 신 비	753,000	
	6,173	전 력 비	6,173	
	835,450	세 금 과 공 과 금	835,450	
	169,990	보 험 료 비	169,990	
	3,400	운 반 비	3,400	
	6,637	도 서 인 쇄 비	6,637	
	95,728	사 무 용 품 비	95,728	
	547,381	소 모 품 비	547,381	
	1,477,146	수 수 료 비 용	1,477,146	
	818,182	광 고 선 전 비	818,182	
	126,237	9.영 업 외 수 익	126,237	
	54,783	이 자 수 익	54,783	
	71,454	잡 이 익	71,454	
	3,255,006	10.영 업 외 비 용	3,255,006	
	3,255,000	이 자 비 용	3,255,000	
	26	잡 손 실	26	
131,029,344	533,819,451	합 계	533,819,451	131,029,344

재무상태표

제 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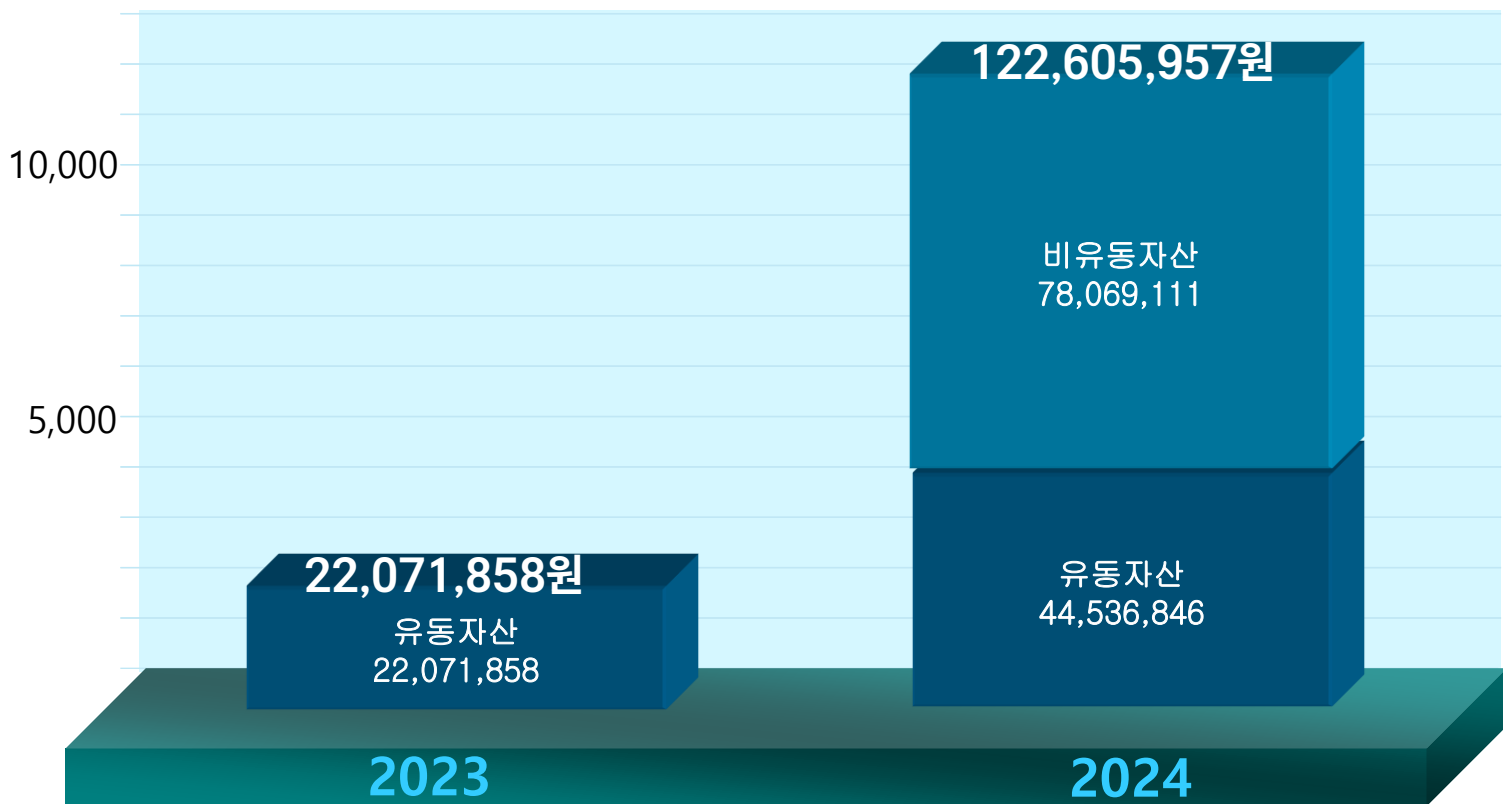
제 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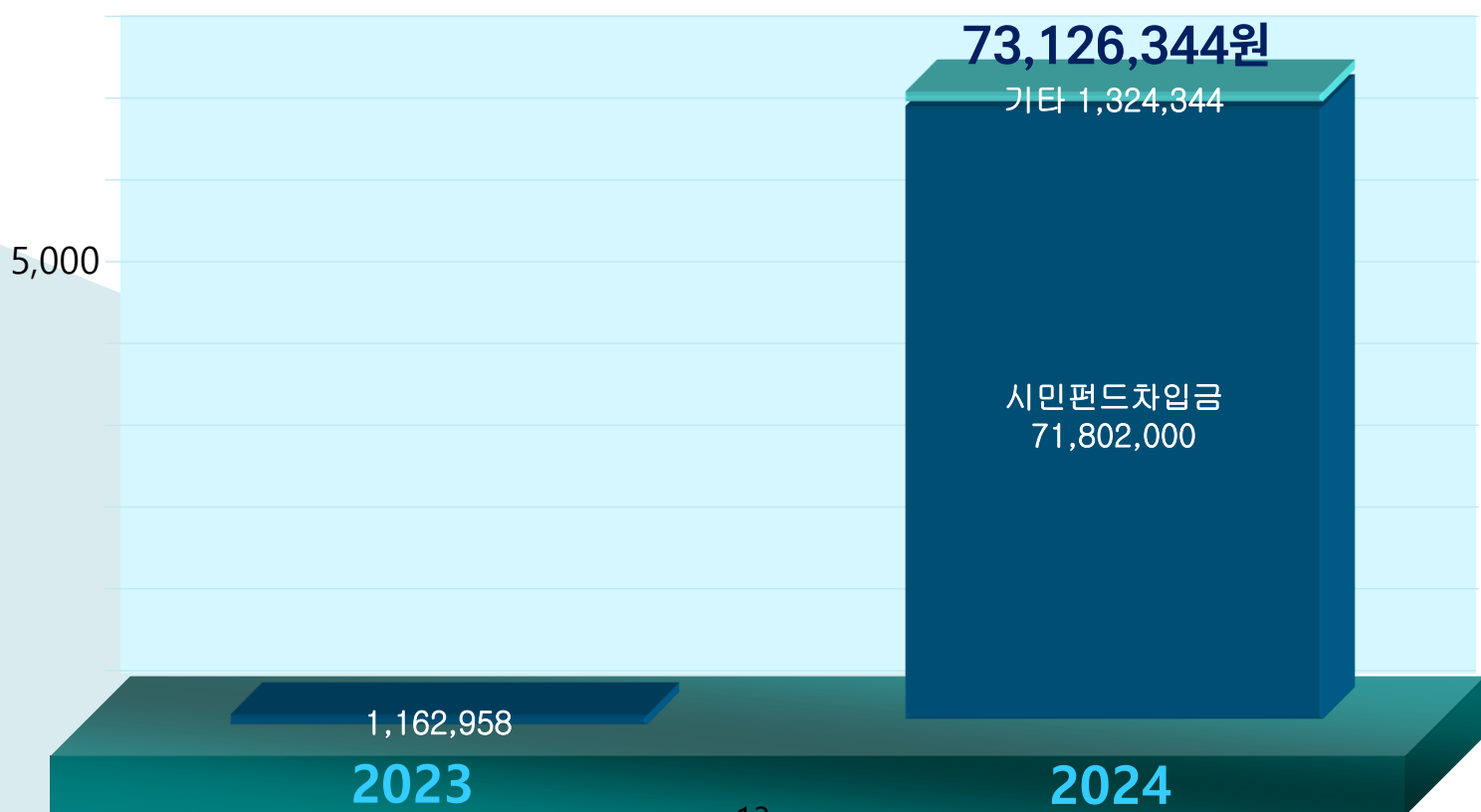
단위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 유 동 자 산		47,786,846		22,071,886
① 당 좌 자 산		47,786,846		22,071,886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31,603,272		20,646,250	
단 기 투 자 자 산	300,000			
선 급 금	14,481,864			
미 환 급 부 가 세 대 급 금	1,401,710		1,425,606	
② 재 고 자 산				
II . 비 유 동 자 산		78,039,111		
① 투 자 자 산				
② 유 형 자 산		78,039,111		
비 품	4,090,909			
시 설 장 치	73,978,202			
③ 무 형 자 산				
④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자 산 총 계		125,825,957		22,071,886
부 채				
I . 유 동 부 채		91,379,344		1,162,986
미 지 급 금	4,089,488		688,570	
예 수 금	71,430		71,430	
가 수 금	418,488		402,986	
시 민 펀 드 차 입 금	86,800,000			
II . 비 유 동 부 채				
부 채 총 계		91,379,344		1,162,986
자 본				
I . 자 본 금		39,680,000		26,500,000
출 자 금	39,680,000		26,500,000	
II . 자 본 잉 여 금				
III . 자 본 조 정				
IV .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V . 결 손 금		5,173,387		5,591,100
미 처 리 결 손 금	5,173,387		5,591,100	
(당 기 순 이 익)				
당기 : 417,713				
전기 : -5,591,100				
자 본 총 계		34,476,613		20,908,9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5,855,957		22,07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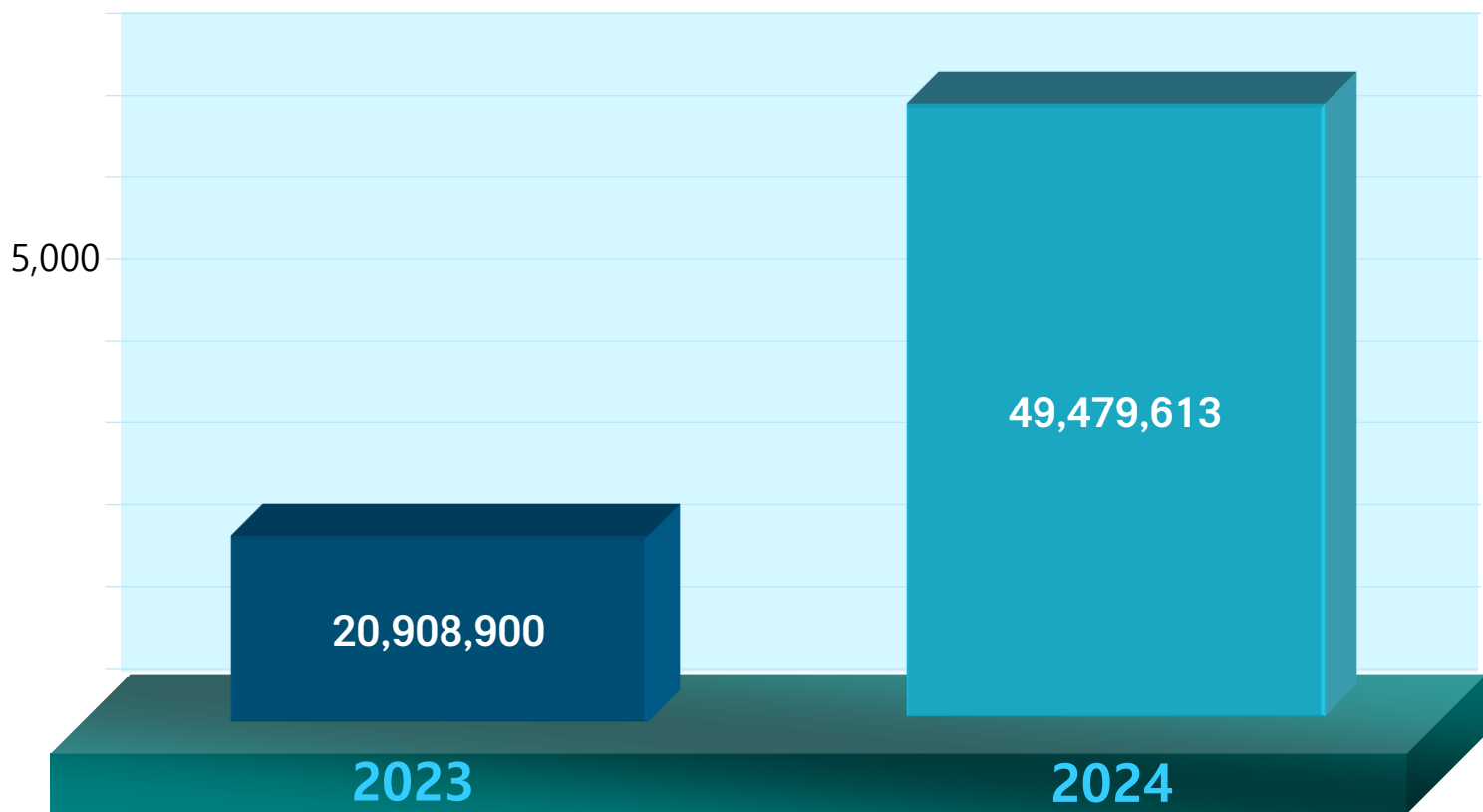
➔ 자산총계 비교



➔ 부채총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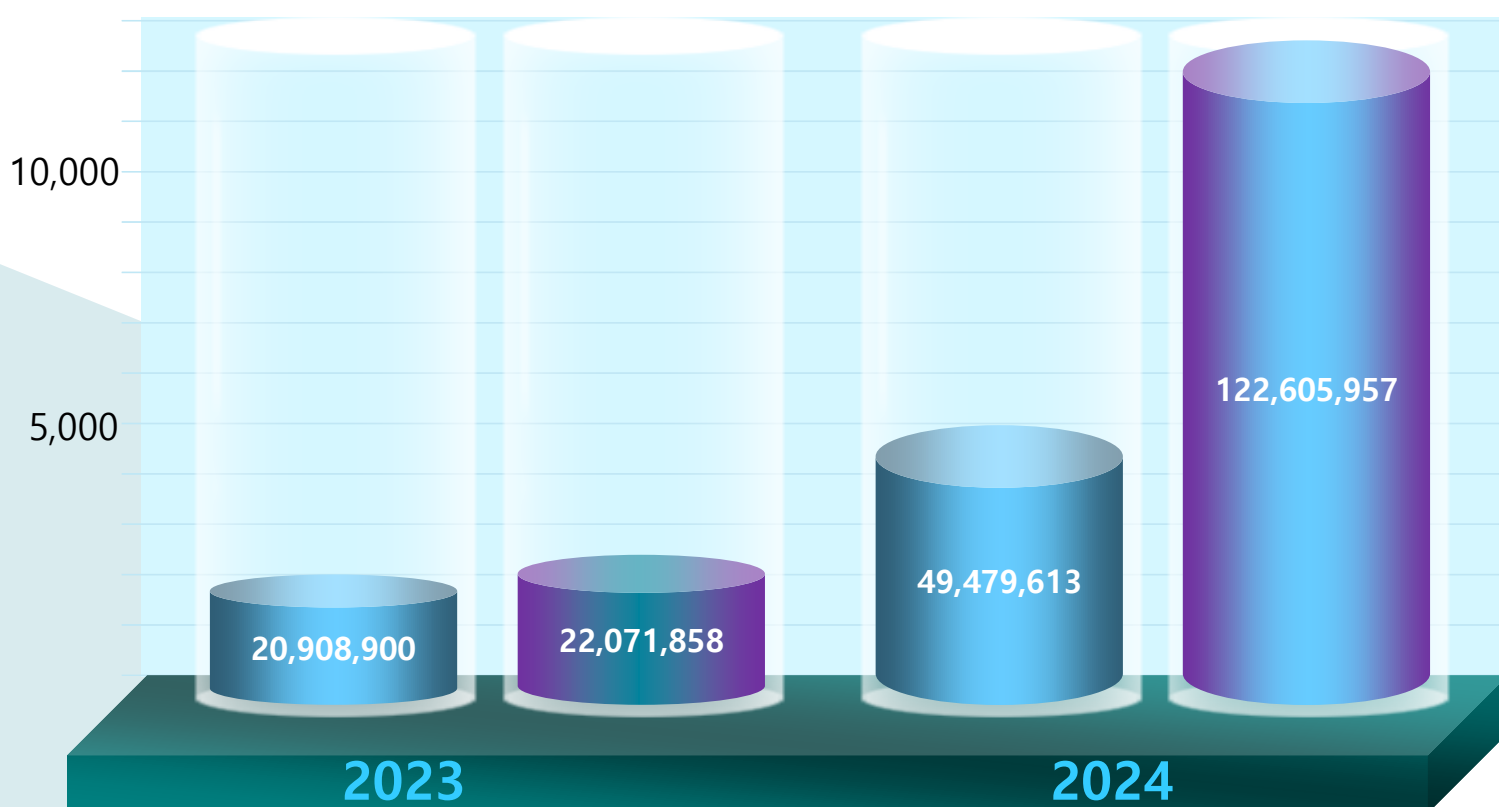
➔ 자본총계 비교



➔ 부채와자본총계 비교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제 2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기 2023년 03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단위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금 액		금 액	
I .매 출 액		16,104,562		
전 력 판 매 수 입	7,086,288			
서 비 스 매 출	9,018,274			
II .매 출 원 가				
III .매 출 총 이 익		16,104,562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12,538,080		10,368,089
직 원 급 여	6,070,000		5,320,000	
외 주 용 역 비	900,000		200,000	
복 리 후 생 비	773,273		781,200	
여 비 교 통 비	11,700		123,000	
접 대 비	90,000		1,226,000	
통 신 비	753,000		486,770	
전 력 비	6,173			
세 금 과 공 과 금	835,480		171,000	
보 형 료	169,990		108,990	
차 량 유 지 비			146,704	
운 반 비	3,400		94,825	
도 서 인 쇄 비	6,637		77,000	
사 무 용 품 비	95,728		629,320	
소 모 품 비	547,381		657,080	
수 수 료 비 용	1,477,146		306,200	
광 고 선 전 비	818,182		30,000	
V .영 업 이 익		3,546,502		-10,368,089
VI .영 업 외 수 익		126,237		4,776,994
이 자 수 익	54,786		27,404	
국 고 보 조 금			4,742,288	
잡 이 익	71,451		7,332	
VII .영 업 외 비 용		3,255,086		5
이 자 비 용	3,255,000			
잡 손 실	28		5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417,713		-5,591,100
IX .법 인 세 등				
X .당 기 순 이 익		417,713		-5,591,100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제 1전기 2023년 01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1월 31일 처분확정일 2024년 01월 31일

회사명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단위 :원)

과목	제 2당 기		제 1전기	
	금액		금액	
I 미처리결손금		5,173,387		5,591,100
1.전기이월미처분결손금	5,591,100		0	
2.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3.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전기오류수정손실	0		0	
5.중간배당금	0		0	
6.당기순이익	417,713		-5,591,100	
II 결손금 처리액		41,771		0
1.임의적립금 이입액	0		0	
2.그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	41,771		0	
3.이익준비금 이입액	0		0	
4.재평가적립금 이입액	0		0	
5.자본준비금 이입액	0		0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131,616		5,591,100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출자금확정(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호 의안 출자금확정(안) 승인의 건

의안심의



선거관리규약 제정(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규약 제정(안)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선거관리규약 제정(안) 승인의 건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선거관리 규약

2025년 3월 6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6조 5항에서 정한 이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정관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이 규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 등록 기간
5. 등록 접수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정관 제48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또는 직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 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확정
9.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관한증빙문서는당해선거에의한임원의재임기간또는소송이법원에계속되는기간중조합에서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추천서, 이력서, 입후보자등록 승낙서, 출자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심사 및 접수】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이중추천의 금지】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2조【기호】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3조【등록의 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의 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공보】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고한다.

제16조【선거방법】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거】① 이사장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 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투표용지】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관위에서 별도 서식으로 정한다.

제20조【투표 및 개표관리】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개표】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2조【무효투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4. 2개 이상 중복 기표를 한 경우

제23조【당선인의 결정】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당선인의 선포】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개시일】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② 제 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27조【대의원 선출방법】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연령, 성비에 있어 균형있게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단위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8조【대의원 요건】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성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는 조합원
2.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기타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29조【대의원 선출시기】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30조【대의원 수】대의원 잔여임기 1개월 전의 지역단위별, 구성원 단위별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대의원 정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대의원 보선】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0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5호 의안

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계획

1

충주시민햇빛발전소 2호기(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개요

- 위 치 :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 시설용량 : 378Kw
- 총사업비 : 6억

→ 추진일정

1월~2월

- 전기사업허가신청
- 설계

사업계획
실시설계
(투자분석)

3월~4월

- 펀드모집공고
- 사업설명회등

펀드모집공고
총사업비의51%이상
사업설명회
개발행위허가

5월

- 금융대출
- 한전 인허가

사업자선정
공사 품질관리
관계기관 인허가

5~7월

- 시설공사
- 준공식&운영관리

준공검사
관계기관 검사

2

3호기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 올해 총 시설용량 1MW 목표 달성
- 3호기 추진 시기 : 하반기(충주시, 충주시의회 협의)
- 조합 담보물건 미흡으로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음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조기에 사업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
- 펀드 투자를 통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합원 추가 확보 필요
➔ 본 조합원만 펀드 투자 가능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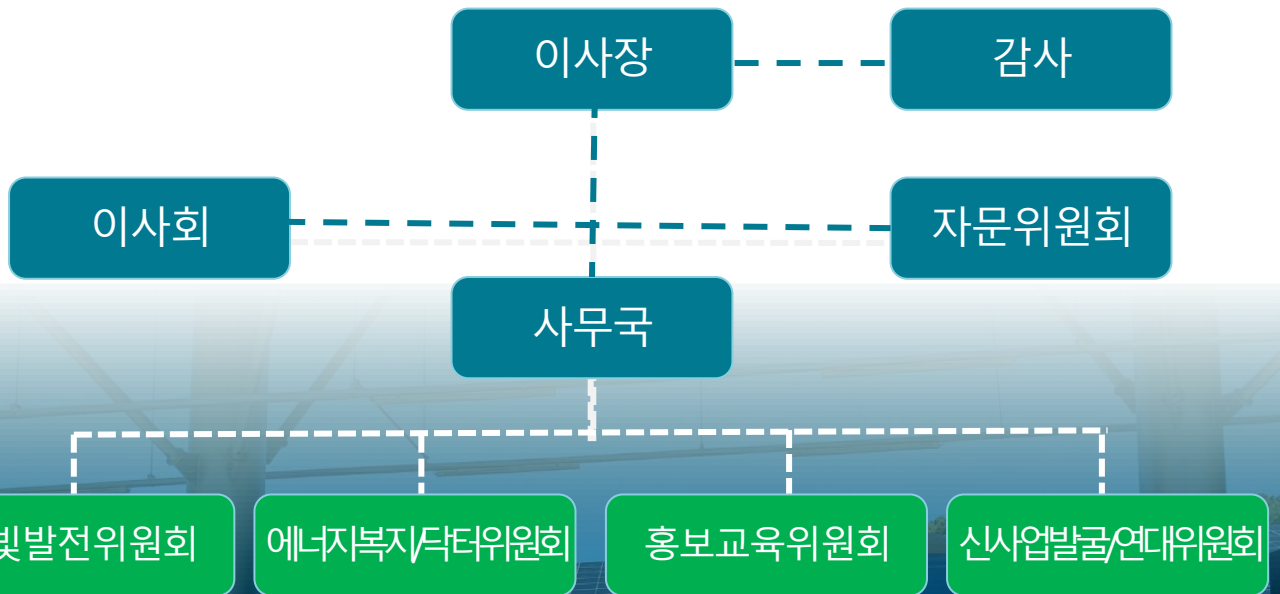
조직개편 및 역량강화

- 정규직 인력 확충 : 2명 (시간제)
- 사무실 확보: 에너지 효율화 사업
도소매업, 기후보호환경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등

- 총회/소위원회에서
조합의 중요사항결정



- 조직강화 및 역량강화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4

에너지복지 / 에너지닥터 사업

➔ 에너지 복지사업

- ❑ 저소득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 등 : 충주시 사업계획에 따라 협의 추진
- ❑ 충주시지속가능협의회 교육용 태양광 설치 기증
 - 용량 : 3kW
 - 학생 현장체험 및 교육에 소비되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 교육효과 제고
 - 사무실 전기사용 절감 가능(자가소비형)



➔ 에너지 닥터사업

- ❑ 충주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태양광(경로당 등) 일부 유지관리 위탁
- ❑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부분에 한하여 우리 조합에서 준공공성 개념(재능기부, 봉사,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 수익창조

햇빛발전협동조합

공공기관
기업&시민단체

5

기타사업

➔ RE100 충주시민클럽 활성화

- ❑ 현재 가입 인원 : 1,333명
- ❑ 시민 홍보 및 동참, 잠재적 조합원 양성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 ❑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 2026년까지 사회적기업 진입 필요
- ❑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정책 없어짐 : 인건비의 85% 지원정책
- ❑ 수의계약이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조기에 진입 필요

➔ 자립을 위한 사업발굴

- ❑ 에너지 효율화 제품(물품) 도·소매업 : 2023년 정관 개정으로 사업 추가
- ❑ 기부금단체 등록 추진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검색



조합원마당

조합원
가입

신청서
작성

출자금
납입

가입
완료

출자 계좌수

1구좌 = 5만원

출자금입금계좌

신협:131-022-031658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예 산 안

수 입 (단위:원)				지 출 (단위:원)			
구 분		금액	구성비 (%)	구 분		금액	구성비 (%)
주 사 업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및운영사업	59,400,000	8.09	주 사 업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및운영사업	658,750,000	89.72
	기후보호,환경 관련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5,000,000	0.68		기후보호,환경 관련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5,000,000	0.68
	RE100 충주시민클럽 사업	0	-		RE100 충주시민클럽 사업	3,000,000	0.41
	에너지 효율화 제품(물품) 도·소매업	5,000,000	0.68		에너지 효율화 제품(물품) 도·소매업	5,000,000	0.68
	재생에너지 시설발전소등 유지보수및청소관리사업	10,000,000	1.36		재생에너지 시설발전소등 유지보수및청소관리사업	8,000,000	1.09
기 타 사 업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훈련및정보제공사업	0	-	기 타 사 업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훈련및정보제공사업	3,000,000	0.41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0	-		협동조합간협력을위한 사업	1,000,000	0.14
	협동조합의홍보및 지역사회를위한사업	0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500,000	0.89
	공공기관(자치체등)에서 위탁받은사업	10,000,000	1.36		공공기관(자치체등)에서 위탁 받은 사업	6,000,000	0.82
	출자금	39,850,000	5.43	경 상 비	인건비	13,000,000	1.77
	후원금	5,000,000	0.68		운영비등	25,000,000	3.40
	금융차입	600,000,000	81.72				
합계		734,250,000	100	합계		734,250,000	100

대의원 명단

연번	성명	조합원번호	연번	성명	조합원번호
1	김경희	160	16	이영주	44
2	김병덕	6	17	이의성	52
3	김승우	129	18	이정범	138
4	김영신	2	19	주영욱	153
5	김주식	115	20	최순옥	142
6	노희경	75	21	최승호	99
7	박문애	76	22	최효정	163
8	박해성	58	23	한경석	4
9	배명한	127	24	한진상	84
10	손광희	9	25	홍기황	38
11	손창국	89			
12	송성석	8			
13	송해근	39			
14	신언호	49			
15	이영섭	126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까지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제도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한다.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스, 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에 대하여 출자감소리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하여야 하는 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사업운영 및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기금
 3. 기타 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부과 또는 징수하기로 한 비용
 4. 공간 및 시설 사용료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 게서면으로 자격 상실 이유를 의결할 일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 내부무집행에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32조 제2항 제5조 규정에 따른 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2조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32조 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일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 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 일의 주전에서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 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32조의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퇴회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③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기도지못하도록하거나 후보자를 사토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기도하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익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임원으로서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2조의3(이사과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이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거쳐 해임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⑥ 임원의 해임 사유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 결과의 공고 등 운영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 보고서는 정기 총회 일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 게제된 회계장부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개정 2023.10.12>
2. 기후보호, 환경 관련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3. RE100 충주시민클럽 사업
4. 에너지 효율화 제품(물품) 도소매업 <신설 2023.10.12>
5. 재생에너지 시설(발전소 등) 유지 보수 및 청소관리 사업 <신설 2023.10.12>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위탁 받은 사업 <신설 2023.10.12>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지역사업형)이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1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을 필요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장회계

제63조(회계연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4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상호부조 사업

제66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소관부처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2024 기록



임원회의



충청북도에너지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전담 진행



제1차 정기총회



RE100 투자유치 MOU



지역사회부문 국회의원 표창(손창남 이사장)



환경의날 홍보부스 운영



▲ 준공식

▼ 배수펌프장 옥상 시설 전경



▼ 예초작업



▲ 에너지소외계층 LED등 교체



▲ 선진지 견학(수원, 안산)



▲ 선진지 견학(수원,)

▼ 햇빛발전소 사업설명회



▼ 2024 정기총회

